

### 5 단계 발령사항 등록

- 교육지원청: 휴·복직 대장에 등록
  - 교육지원청: 호봉재획정표(호봉업무 담당자가 작성), 나이스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교과, 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인사정책과 보고 후 입력
-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3. 타교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질병, 육아, 가족돌봄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 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 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 받음.  
이 경우 육아휴직 복직 시 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 함.

※ 타교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복직 대상자임

### 4. 휴·복직발령 유의사항

-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전)에 휴·복직발령 하고 즉시 보고할 것
-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다. 휴직과 휴가를 혼동하지 말 것  
질병휴직과 병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